



제 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용진흥법안

검 토 보 고

〈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 체계 마련 〉

■ 유정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299호)

2024. 5.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가. 제정안의 필요성	3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7
2. 조문별 검토	8
가. 총칙적 규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8
나. 무용예술위원회(제6조부터 제16조까지)	11
다. 무용진흥기금(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8
라. 국립무용원(안 제20조)	22
마. 무용 교육과 무용인 양성 등(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25
바. 소외계층의 무용 활동 지원 및 무용인 양성 등(안 제22조 및 제23조) ...	2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유정주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 17.

다. 회 부 일 : 2024. 1.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대중화·세계화가 가능한 예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예술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
을 설치하도록 하고 무용의 창작과 보급 및 발전과 계승 등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제1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두도록 하고, 국립무용원은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보급,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등의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며, 문체부장관은 무용의 보급·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무용원의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
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필요성

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 등으로 분류됨¹⁾.

무용은 기초예술의 핵심적인 장르로 지속적인 발전과 대중화가 필요하나, 무용 분야 공연 단체는 2022년 기준 475개로 공연예술의 타 장르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수가 적은 편이며, 공연의 평균 수입액 및 공연 실적 역시 가장 저조하거나 국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편으로, 무용 진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무용단체 공연실적]

구분	단체수(개)	공연건수(건)	공연횟수(회)	티켓 판매수	티켓 판매액 (백만원)
전체	4,294	14,440	49,682	13,658,581	561,795
연극	1,076	2,588	42,452	2,810,484	46,195
뮤지컬	275	2,756	32,175	7,330,817	424,918
양악	1,463	6,921	7,682	2,469,083	67,881
국악	756	1,092	2,003	374,835	6,161
무용	475	783	1,446	539,587	14,594
비중	11.1%	5.4%	1.7%	3.95%	2.6%
복합	249	300	1,499	133,775	2,045

자료: 2023년 공연예술조사

1) 2023 공연예술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무용은 현재 「문화예술진흥법」²⁾과 「공연법」³⁾ 상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서 명시되고 있을 뿐 개별 법률이 부재하여 무용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문화예술 분야 장르별 입법 현황]

분야	관련법	비고
문학	「문학진흥법」	
미술	「미술진흥법」	2024.5 시행예정
음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무용	「공연법」	
연극	「공연법」	
영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연예(演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공연법」	
국악	「국악진흥법」	2024.5. 시행예정
사진	-	사진진흥법안 법사위 계류
건축	-	건축예술진흥법안 문체위 계류
어문	「국어기본법」	
출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미술	「미술진흥법」	
만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뮤지컬	-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문체위 계류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이에 제정안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국악, 미술 등과 같이 개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장르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봄.

다만, 제정안의 무용예술위원회, 무용진흥기금 등의 규정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예술위원회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등과 그 내용이 유사한바, 무용 분야에 대해서 별도 법률을 통해 위원회 및 기금 체계를 마련할 경우 「문화예술진흥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및 타 장르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제정안에 따라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실태조사, 무용진흥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로 2025년 2억 1,000만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각 6,000만원 등 2025년부터 5년간 총 4억 5,000만원(연평균 9,000만원)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안 제5조)	150	-	-	-	-	150	30
무용진흥 협의체 구성·운영(안 제16조)	60	60	60	60	60	300	60
합 계	210	60	60	60	60	450	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주)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재정수반요인	추계여부	비고
실태조사(안 제5조)	○	
무용예술위원회 등(안 제6조~제15조)	X	추계곤란
협의체의 구성(안 제16조)	○	
기금의 설치 등(안 제17조~제19조)	X	추계곤란
국립무용원(안 제20조)	X	추계곤란
학교 등의 무용 진흥(안 제21조)	X	추계곤란
소외계층 관련 무용 진흥(안 제22조)	X	실시 중
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안 제23조)	X	실시 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본칙 24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 체계는 다음의 표와 같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실태조사)
	제2장 무용예술위원회	제6조(무용예술위원회) 제7조(설립등기 등) 제8조(정관)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장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제13조(사무처) 제14조(감사) 제15조(성과의 평가) 제16조(협의체의 구성)
	제3장 무용진흥기금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제18조(무용진흥기금의 조성) 제19조(무용진흥기금의 용도) 제20조(국립무용원)
	제4장 무용 교육과 무용인 양성 등	제21조(학교 등의 무용 진흥) 제22조(소외계층 관련 무용 진흥) 제23조(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이 법의 시행에 따른 준비행위)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적 규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1조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무용, 무용인 및 무용문화산업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안 제3조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무용 및 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해당 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용”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신체로 표현한 예술로서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 생활무용 등을 말한다.

2. “무용인”이란 무용 창작, 공연, 교육, 비평, 학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용문화산업”이란 무용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무용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제정안의 목적, 제정안의 핵심적 용어에 대한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실태조사 규정 등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체계에 필요한 규정으로, 앞서 개별

법으로 제정된 「문학진흥법」 및 「국악진흥법」 등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안 제2조제2호는 “무용인”을 “무용 창작, 공연, 교육, 비평, 학술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된 예술의 장르로서 개별적인 진흥법이 제정된 「국악진흥법」, 「미술진흥법」의 경우 해당 예술 장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문학진흥법」⁴⁾의 경우 “문학인”을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무용인”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성과 무용인의 범위에 교육, 비평, 학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 및 무용계에 통용되는 “무용”의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고, 무용인의 범위에 무용 창작·실연 이외에 무용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4) 「문학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무용예술위원회(제6조부터 제16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6조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인 무용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회의 설립 등기 및 정관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 구성 및 임기와 위원장 선출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는 위원회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무용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직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위원회 사무 보조를 위한 사무처와 직무·회계 감사를 위한 감사를 두도록 함.

안 제15조는 위원회의 사업 활동 및 무용진흥기금 지원 성과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위원회가 무용 진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제6조(무용예술위원회) ①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설립등기 등) ①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성립한다.

② 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무용 내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결원되면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 위원의 자격, 대우, 직무는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무용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7조에 따른 무용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13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 사무처장은 상근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감사) ① 위원회의 직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제15조(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무용진흥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는 무용을 진흥하기 위하여 분야, 지역 간 협의 및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안 제2장은 무용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과 기금 지원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⁵⁾에 근거하여 설치된 한국문화예술

5)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가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수행하며 이미 무용 분야 진흥을 지원하고 있고 제정안의 규정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규정과 구성·기능·성과 평가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유사하여 무용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기초예술 분야 중 개별 장르의 지원 사업을 위해 법인격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르가 없어 무용 분야와 타 장르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무용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무용예술위원회 (제정안)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무용예술위원회) ①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추천위원회에는 무용 내 각 분야 및 지역 인사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구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3명 이상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가 소유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무용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가 제17조에 따른 무용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제33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3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 사무처장은 상근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는 무용을 진흥하기 위하여 분야, 지역 간 협의 및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 예술 전반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무용예술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무용진흥기금(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17조는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무용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각각 무용진흥기금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 규정함.

[제정안 조문표]

제정안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무용진흥기금은 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무용진흥기금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무용진흥기금의 조성) ① 무용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무용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무용진흥기금의 용도) 무용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무용의 창작과 보급
2. 무용의 발전과 계승
3. 무용문화산업 발전
4. 국내외 무용교류
5. 무용인의 양성 및 직업 교육
6. 무용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 관련 무용 창작과 보급
9. 무용 관련 학술 및 연구를 위한 사업
10. 무용 관련 도서관 및 박물관 등 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무용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2) 검토의견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용진흥기금을 독립된 회계로 새롭게 설치하려는 것으로, 무용 창작·보급 확대, 무용문화산업 발전 및 무용 관련 시설 건립 등 무용 진흥 시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6)에 근거하여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무용 분야를 포함한 기초 공연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

6)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지원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가 중복될 우려가 있고, 「국가재정법」 제14조 및 제15조⁷⁾가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에 기금을 신설하며 기금 상호 간 유사·중복이 있을 경우 기금을 통합·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용진흥기금의 설치가 「국가재정법」 상 기금 신설의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무용 분야 지원 현황(2024년)]

사 업 명	지원 예산 (백만원)	선정 건수
공연예술창작주체	1984	18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	미정	미정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신작 후보)	275	11

- 7)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은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예술네트워크 유형1	25	2
국제예술네트워크 유형2	165	4
창작의과정	45	5
현장예술인력지원	1053.5	29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	281	3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96	2
청년예술가도약지원	200	8
총계	4124.5	8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기초예술 분야 중 개별 장르의 진흥을 위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의 중복을 고려하여 무용진흥기금의 신설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라. 국립무용원(안 제20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20조는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립무용원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새롭게 설치하고, 국립무용원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제20조(국립무용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둔다.
② 국립무용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보급
2.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3. 무용자료의 수집·제공·전시 및 관리
4. 무용인의 복지 향상 정책 및 인권 보호
5. 무용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6. 기타 무용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의 보급·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무용원 소속에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현재 무용 관련 진흥 사업을 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단체로서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장의 국립무용단 및 국립국악원 무용단이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보급,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⁸⁾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의전당 등이 기초예술의 한 분야로서 무용과 관련된 공연 및 창작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무용 진흥 기관 현황]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국립국악원 무용단
조직	1국 4팀	1국 5팀	국립극장 소속단체	국립국악원 소속단체
인원	정원 94명 (현원 91명)	정원 17명 (현원 17명)	정원 70명 (현원 56명)	정원 54명 (현원 49명)
예산 (국고지원)	17,890백만원 (13,374백만원)	7,815백만원 (7,015백만원)	13,219백만원	27,875백만원
주요 사업	- 국내외 우수 레퍼토리 및 창작발레 공연 - 발레 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	- 현대무용작품의 창작·공연 - 현대무용작품 보급 및 관객 개발 등	- 전통 춤 원형 재연 - 한국무용 창작 공연	- 궁중무용 복원·재현 - 민속무용 전승·한국무용 창작 공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주) 국립극장 국립무용단 및 국립국악원 무용단은 예산 전액이 국고 지원되며, 동 기관에 설치된 예술단체(국립극장 3개, 국립국악원 4개)의 운영 예산 전체를 기재함.

안 제20조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8)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7조(예술의 전당) ①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술의 전당을 둔다.

기관으로 국립무용원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무용 창작 및 보급 환경을 조성하고 무용 관련 교류 기능을 확대하며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립무용원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국립무용원의 업무에 무용의 진흥 및 무용인의 복지 향상이 포함되어 있는바, 안 제2조에 따른 “무용”과 “무용인”의 정의에 대한 학계 및 무용계의 의견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건립 주체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는 정부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조직법」⁹⁾에 따라 각 부처 직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립무용원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임.

9)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마. 무용 교육과 무용인 양성 등(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21조는 무용 교육과 관련된 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 무용 관련 교과를 두도록 권장하고, 학교 및 직장에 무용 관련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며 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조문표]

제 정 안
제21조(학교 등의 무용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 무용과 관련된 교과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구성원의 정서와 교양을 위하여 무용과 관련된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¹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청소년·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단체의 활동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0)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청소년·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¹¹⁾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학교의 교과로 정하고 있으며, 무용 관련 교육은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를 통해 ‘체육’ 교과에 포함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안 제21조는 학교 및 직장에서의 무용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 무용 관련 교과의 편성과 무용 관련 단체 활동을 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무용 교육의 확대와 무용 활동 지원을 통해 무용의 대중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교과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교과목에 대해 정하고 있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¹²⁾에 따라 교과

11)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등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결정 및 고시의 권한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있다는 점에서 개별법으로 특정 교과에 편성을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 체계와 상충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22조가 학교교육에 관련된 사안으로 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관계 부처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안 제22조가 현행 법령 체계와 상충되고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바. 소외계층의 무용 활동 지원 및 무용인 양성 등

(안 제22조 및 제23조)

1) 제정안의 요지

안 제22조는 소외계층의 무용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관련 사업 및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는 무용인의 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및 경비 보조에 대하여 규정함.

[제정안 조문표]

제정안
제22조(소외계층 관련 무용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무용 창작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의 무용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외계층의 무용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대상 무용 창작 및 교육 사업과 무용 관련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과 관련된 직업 창출, 진로 탐색 기회 확대, 직업분류 개발 등 무용인의 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용인의 직업 훈련 등을 위한 사업 및 무용 관련 단체에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¹³⁾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¹⁴⁾하고 있음.

또한, 「예술인 복지법」¹⁵⁾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¹⁶⁾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13)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제30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5)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④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

복지 증진, 직업적 권리의 신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가지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무용 예술인들의 직업 전환과 창작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안 제22조는 소외계층의 무용 활동 장려 및 창작·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관련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문화 소외계층의 무용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고 무용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23조는 무용인의 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경비 보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무용인들의 직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무용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무용 예술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2조는 무용인의 범위를 “무용 창작, 공연, 교육, 비평, 학술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23조에 따른 지원 대상 무용인의 범주가 포괄적인바, “무용”의 정의와 “무용인”의 범주에 대하여 학계 및 무용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은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로서 「국악진흥법」 17), 「미술진흥법」 18) 등은 해당 예술 분야의 종사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도 무용인의 범주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9

17) 「국악진흥법」 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8) 「미술진흥법」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2. 산·학·관의 협력 강화
3. 전문인력의 연수·교류·재교육 기회 확대
4. 연구기반 강화
5. 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 기회 확대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